도시관리계획(공공청사 A호)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

의 안 번 호 1379

제출연월일: 2017. 6. 30. 제 출 자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우정동주민센터는 40년이 경과된 노후시설로 주민편의 공간의 부족에 따른 이용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구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
- 나. 해당 공공청사를 신축하고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 2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규 모

1) 결정면적: A=1,119.0㎡

2) 건축개요: 지상4층, 연면적 1,485.25㎡, 건축면적 473.5㎡

나. 위 치: 당산5길 49-4(우정동) 일원

라. 사 업 비: 6,286,353천원(보상3,936,100 공사2,350,253)

마. 추진사항: 주민 의견청취

1) 열람기간: 2017. 6. 20. ~ 2017. 7. 3(14일간)

2) 주민의견: "의견없음"

※ 2017. 6. 27. 현재 주민의견은 없으며 향후 변경될 수 있음

3. 근거법규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8조

4. 위치도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안: 따로 붙임

5. 참고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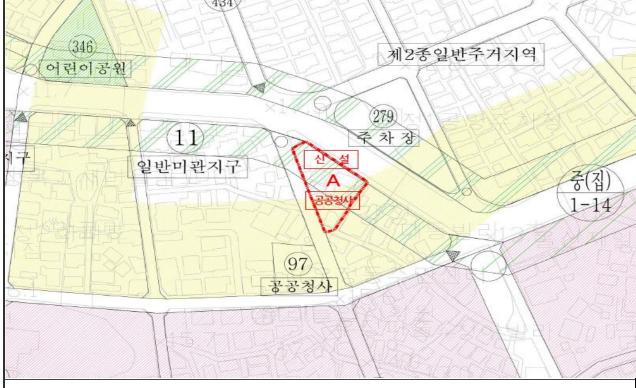
가. 예산조치사항: 해당없음

나. 입법예고 : 해당없음

【붙임】 위치도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안



위치도(당산5길 49-4(우정동) 일원)



도시관리계획(공공청사 A) 결정 안

의 안 번 호

1379

【도시관리계획(공공청사 A호)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】

1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일 자 : 2017. 6. 30.(금) 나. 제 출 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7. 7. 3.(월) 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7. 7. 13.(목)

2. 제안설명 요지(건설도시국장 서인보)

가. 제안이유

○ 우정동주민센터는 40년이 경과된 노후시설로 주민편의 공간의 부족에 따른 이 용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구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

O 해당 공공청사를 신축하고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가. 규

1) 결정면적: A=1.119.0㎡

2) 건축개요: 지상4층, 연면적 1,485.25㎡, 건축면적 473.5㎡

나. 위 치: 당산5길 49-4(우정동) 일원

다. 사 업 비: 6,286,353천원(보상3,936,100 공사2,350,253)

라. 추진사항: 주민 의견청취

1) 열람기간: 2017. 6. 20. ~ 2017. 7. 3(14일간)

2) 주민의견: 1건

제	출	의	견	사업부서 (총무과) 의견	검토결과
_ 2016년 대상지를				주민센터 건립은 공익 사업으로 정상추진	미반영

다. 근거법규

○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8조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신원기)

- O 우정동주민센터는 1976년도에 건립되어 시설이 낡고 노후된 시설로 공간협소와 주민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어, 당산5길 49-4일원에 신축하기 위해 「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하고자 하 는 것으로,
- O 주민이용의 편의성 제고와 구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가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